

제주지방법원 2021. 7. 15 선고 2021가단2652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파산자 B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1. 7. 15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C 전 2410㎡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와 1992. 10. 17. 접수 제4092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 조병대

청 구 원 인

1. 당사자 사이의 관계

가. 파산자 B 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

(1) 원고는 "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C 전 2410㎡" (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)의 소유자인데, 원고는 소외 D가 B 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,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.

(2) B 조합은 소외 D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,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 설정자를 원고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,5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1992.10.16. 체결하고, 1992.10.17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무자 소외 D, 근저당권자 B 조합, 채권최고액을 4,5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. (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)

나. 파산자 B 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

그런데, B 조합은 2003.04.24. 파산선고를 받았고, 예금보험공사는 제주지방법원의 선임결정으로 2003.04.24. B 조합의 파산관재인이 되었습니다. (갑 제2호증의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) (갑 제2호증의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)

2.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사실

가. 채무자 D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1992.10.17. 설정된 피담보채무는 전액 변제하였다고 하였고, 원고 또한 설정등기 후 28년이 지난 2021.04. 현재까지 근저당권자인 B 조합은 물론,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로부터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어떠한 회고나 이행

청구를 받는 등의 시효중단의 사유는 단 한번도 없습니다.

나. 설명, 채무자 D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더라도, B 조합이 영업행위로서 대여한 대출금에 대한 채권은 상법 제 64 조에서 정한 5 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되고, B 조합은 2003.04.24.파산선고를 받아, 채무자 D가 B 조합과 세로이 금원을 차용하는 등 거래가 불가능하여,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.

다. 소 결

그러므로, 채무변제,소멸시효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, 소멸한 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도 소멸되므로,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.

3. 결 론

결론적으로,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무의 소멸에 따라 말소되어야 할 것인바, 파산관재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,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본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.

